

RVS 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2024. 3. 15. 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(RVS)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위원회의 구성)

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. 위원장은 RVS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위원회의 운영)

RVS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, 위원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. 위원회는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RVS 논문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연구출판윤리에 관한 사항
- RVS 논문 발행 후 연구출판윤리에 관련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
- 심의의 주된 사항으로는 위조, 변조, 표절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, 저자의 자격(authorship), 중복게재, 이해관계,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다.

제5조 (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)

RVS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적발된 경우,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.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.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.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,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.

조사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, COPE Flowcharts (<https://publicationethics.org/guidance/Flowcharts>)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(부칙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